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94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이정문·한민수·이학영

문진석 • 조승래 • 복기왕

박 정・김남근・김원이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2025년 4월 22일,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의 대규모 USIM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례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유출 당사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사후적으로 유통실태를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 리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34조의2"를 "제34조의2, 제34조의3"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모니터 링 및 고발

제4장에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모니터링과 보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를 한 때로부터 2년간 유출등이 된 개인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 정황 등을 수집·분석하는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

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하여 개 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그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자를 고발하여야 한다.
- ③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거나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제2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제34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모니터링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
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생	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현
략)	행과 같음)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	8
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	
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	
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u>제34조의2</u> , 제35조, 제3	<u>제34조의2, 제34조의3</u> -
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	
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	
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는 "수탁자"로 본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략) ② ~ ④ (생략)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4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모니터링 및 고발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모니터링과 보고)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 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에는 신고를 한 때로부터 2년 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의7제1항제6호의2에 따른 정 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 정황 등을 수집・ 분석하는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

 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 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 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 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 근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 1항제6호의2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그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자를 고발하여야한다.
- ③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로 인 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 는 이익을 침해받은 정보주체 는 그 개인정보가 「정보통신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8. (생 략) <신 설>

19. ~ 27. (생략)

③ ~ ⑤ (생 략)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 6호의2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거나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
- -----.
- 1. ~ 18. (현행과 같음)

18의2. 제34조의3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 출등이 된 개인정보 모니터링 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19. ~ 27.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